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1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이만희 · 김기웅 · 김기현
서천호 · 구자근 · 김석기
이종배 · 조은희 · 이성권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 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100m 접근금지의 기준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결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동에게 직접 접근하여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 다.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 라.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동 조항 후단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상향되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법원에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을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제19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 피해

아동등”을 “관할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제2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판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검사와 피해자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아동학대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제2호의2,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u>검사는</u>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u>사법경 찰관 또는 검사는</u> ----- ----- ----- ----- -----.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u>청 구 또는 그 신청을</u>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 ----- ----- ----- ----- <u>청구를</u> ----- ----- -----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 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 치를 <u>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u> <u>는 검사 및</u>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다.	③ ----- ----- ----- <u>청구하지 아니하는 경</u> <u>우에는</u> ----- -----.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 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 -----

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에 제19
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

③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임시조
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
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신설>

3.~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나 그-----

2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3.~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7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관할경찰관서
의 장, 검사, 피해아동등,-----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

③ ~ ⑤ (생략)

<신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판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검사와 피해자 및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 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 :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아동학대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 방법 등 고지